

사회봉사활동 운영 규정

제정 2026. 4. 6.

제 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청강문화산업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.)의 교직원 및 학생들의 사회봉사활동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이 규정은 본교 교직원 및 학생이 참여하는 모든 사회봉사활동에 적용한다.

제 2장 사회봉사단

제3조(설치) 본교는 자연사랑 · 인간사랑 · 문화사랑의 건학이념을 바탕으로 교직원과 학생이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, 대학의 사회적 역할을 실천하며,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사회봉사단을 둔다.

제4조(구성) 사회봉사단의 조직은 별표 1과 같으며, 조직 구성은 다음과 같다.

- ① 사회봉사단을 대표하는 단장은 총장으로 한다.
- ② 교육지원처 담당 부서장과 학생 담당 부서장을 부단장으로 하며, 단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③ 사회봉사단의 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교직원과 학생의 사회봉사활동 업무 담당자를 간사로 둔다.
- ④ 사회봉사단 단원은 본교 교직원 및 학생으로 한다.

제5조(사업) 본 봉사단은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다.

- ① 사회봉사활동 운영 계획 수립
- ② 사회봉사활동 운영에 필요한 행·재정적 지원
- ③ 사회봉사활동 프로그램 운영
- ④ 사회봉사활동 실적 관리
- ⑤ 사회봉사활동의 평가 및 개선
- ⑥ 국내·외 봉사기관 선정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
- ⑦ 사회봉사활동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

제6조(교직원의 사회봉사 범위) 교직원의 사회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.

- ① 지역사회 발전 및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활동

- ② 전문지식을 활용한 재능기부 및 자문 활동
- ③ 학생 봉사활동 지도·인솔
- ④ 우리대학 사회봉사단 프로그램 참여활동
- ⑤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에서의 봉사활동
- ⑥ 그 밖에 총장이 사회봉사활동을 인정하는 활동

제7조(학생의 사회봉사 범위) 학생의 사회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.

- ①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
- ② 지역사회 개발 및 발전에 관한 활동
- ③ 환경 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
- ④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 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·보호에 관한 활동
- ⑤ 인권 옹호 및 평화 구현에 관한 활동
- ⑥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
- ⑦ 대학 내 필요한 제반 봉사활동
- ⑧ 공인 기관에서 실시하는 해외 봉사활동
- ⑨ 기타 총장이 인정하는 봉사활동

제8조(자격상실)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단원의 자격이 상실된다.

- ① 본 봉사단의 목적 위배
- ② 본 봉사단의 명예 손상
- ③ 본 봉사단 탈퇴
- ④ 본인 유고

제3장 장 려

제9조(특전) 봉사활동 참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.

- ① 사회봉사활동 우수자에 대한 해외봉사활동 지원 시 우선 선발
- ② 학생의 경우 학적부에 사회봉사활동사항 기재
- ③ 사회봉사활동 우수자에 대한 시상
- ④ 사회봉사활동 증명서 발급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26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 사회봉사단 조직표

